

- 건물 및 부대시설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4-5
 - 연면적 : 264㎡(지상6층건물 중 5층 일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무상대부 사용 재산목록

연번	물 건 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천원)	비 고
	서울문화재단 본관		건물 353.43 토지 537.20	1,264,000	
1	중구 예장동 4-6	건물	353.43	45,000	부대시설포함
2	중구 예장동 4-6	대지	537.20	1,219,000	
	서울문화재단 별관		건물 264	66,000	부대시설포함
1	중구 예장동 산 4-5	건물	264	66,000	
	합 계		건물 617.43 토지 537.20	1,330,000	

난지환경대중골프장 협약해지와 시민가족공원 추진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7
------	----

2004. 9. 7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청 원 인 : 여진구(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75-591)외 19인
- 나. 소개의원 : 정 홍 식 의원
- 다. 접수일자 : 2004년 7월 26일
- 라. 회부일자 : 2004년 8월 3일
- 마. 상정일자 : 2004년 9월 7일(제151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상정·의결

2. 청원 요지

- 월드컵공원내 노을공원에 2001. 7. 20. 서울특별시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결한 “난지도 노을공원 조성운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하고 시민가족공원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며, 서울특별시가 공단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고발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청원함.

3. 취지설명 요지 (정홍식 의원)

- 동 청원은 난지도 노을공원 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약대상자인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현재 공사가 완료준공된 시민공원 및 환경대중골프장 협약의 목적인 공익성 확보와 생태친화적 여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협약 불이행으로 시민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결한 “난지도 노을공원 조성·운영에 관한 협약” 해지와 시민가족공원으로 추진 및 변상금 부과·고발 등을 요청하는 것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 중 식)

- 동 청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소속 정홍식의원님의 소개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175-591 여진구의 19인으로부터 접수되어 접수번호 제77호로 2004. 8. 3.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청원의 요지는 폐기물매립지인 난지도 105만평에 대중 골프장을 건설하여 시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골프의 대중화, 골프 꿈나무 육성에 기여하고자 2001. 7. 20. 서울특별시와 서울올림픽 기념 체육진흥공단이 협약을 맺어 공단이 골프장을 건설하고 이를 시에 기부채납한 후 공단에서 운영관리할 계획이었으나 공단은 현재 공사가

완료 준공된 골프장 및 시민공원의 개장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고 원래 협약의 목적이었던 공익성 확보와 생태친화적 여건의 불이행 등 협약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첫째, 서울특별시와 공단간의 “난지도 노을공원 조성 운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하고 시민공원으로 추진하여 달라는 것과

둘째, 서울특별시가 행정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공원을 무단점유한 공단측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청원임.

□ 동 청원의 심사 여부에 대한 의견

- 동 청원과 관련하여 공단측에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난지환경 대중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
- 청원은 청원법 제5조(청원의 불수리사항), 지방자치법 제66조(청원의 불수리),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에 의거 재판에 간섭하는 경우에는 불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청원을 심사하기전 동 청원이 재판에 간섭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재판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심사를 하고, 간섭한다고 판단되면 청원인에게 의장의 명의로 불수리 통지를 하여야만 할 것임.
- 그 동안 우리시의회 4인의 변호사출신 입법고문에게 동 청원이 재판에 간섭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요약하면 3인은 위 소송과 본청원은 그 대상내용이 상이하어 직접적으로 재판에 간섭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고, 1인은 재판에 간섭하는 청원이라고 자문하였음.
- 또한 공단측 변호인단의 의견은 청원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하여 청원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음. 따라서 고도의 법적판단 또는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동 청원의 심사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할 것인지 계속심사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만 할 것으로 사료됨.

□ 계속심사를 전제로 협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지할 수 없는지에 대한 자문결과는 4인중 2인은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반면 2인은 유보 또는 불가능의 자문을 하였음. 공단측 변호인단의 자문결과는 공단이 위 개정조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난지골프장 신설 등의 기부부무를 이행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역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이를 협약 해지사유로 보아 협약을 해지하려는 청원 역시 위 재판에 간섭하는 청원으로서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임.

□ 협약을 해지하고 시민공원으로 하여 달라는 것과 공원을 무단점유한 공단측에 대하여 변상금부과 고발 등의 조치요망에 대한 의견

- 동 청원은 서울시가 소송당사자이며 이 건을 처리하여야 할 주된 행정 처리기관임. 동 청원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에 대한 전문을 소개하면 “첫째 난지골프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측의 조례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협약해지 및 해지 후 공원으로 변경 등을 검토할 사항임.” “둘째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또한 조례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소송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할 경우 검토할 계획임.” 이상과 같이 서울시에서는 소송계속중인 동 건이 최종 확정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것임.

□ 동 청원에 대한 종합의견

- 동 청원이 소송에 간섭하는지 여부에 따라 청원불수리 통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심사를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그 판단은 고도의 법률적 검토와 법리적 해석에 따른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청원을 제출한 시민단체들의 의견 또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만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서울시는 소송당사자이며, 그리고 행정처분기관임. 따라서 동 청원건에 대한 의견, 즉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 및 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의견 또한 존중되어야만 할 것임. 이상과 같이 여러 기관 및 시민단체등과의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동 청원건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생략
-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 8. 심사결과 : 본회의 부의하기로 가결.
-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 건 서

- 청원명 : 난지환경대중골프장 협약해지와 시민가족공원 추진에 관한 청원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장
- 채택의견 :
 -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처리여부를 의회에 보고할 것.

청원요지서

접수번호	77		접수년월일	2004. 7. 26
청원인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175-591		
	성명	여진구의 19인	주민등록번호	
소개의원	정홍식 의원 (열린우리당, 관악구 제3선거구, 환경수자원위원회)			
건명	난지 환경대중골프장 협약 해지와 시민가족공원 추진에 관한 청원			
소관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요지

- 서울의 급격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쓰레기매립지로 이용되어 온 난지도 일대 105만평을 새롭게 조성하여 환경공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월드컵공원내 노을공원에 대해 지난 2001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을 거쳐 공원과 골프장 조성 후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공원과 골프장 이용을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성과 생태친화적인 골프장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음.
- 협약대상자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현재 공사가 완료 준공된 시민공원 및 환경대중골프장 개장을 고의로 연기하는 등 시민이용공간의 미개방과 협약의 목적인 공익성확보와 생태친화적 여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협약불이행으로 시민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 이에 청원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결한 “난지도 노을공원 조성 운영에 관한 협약” 해지와 시민가족공원으로 추진 및 변상금 부과, 고발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